



Global Goings-on

영국

장애인의 권익 신장에 관한 성과 보고서 발표 (Disability Equality)

영국정부는 the Office for Disability Issues (ODI)의 연간보고서, 11개 부처의 관련 보고서 및 장애평등의무(Disability Equality Duty)¹⁾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결과들을 발표함으로써 2025년까지 장애인의 권익을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신장하고자 하는 영국 정부의 계획에 대한 중간성적을 점검하였다.

장애인의 권익 신장과 관련하여 부처별 보고서가 발행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각 부처별 보고서는 장애인 권익 신장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성과보고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또한, 변화를 위한 절차도

입을 위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들이 취해야 하는 전략에 관한 논의도 포함하고 있다.

ODI는 부처별 결과를 요약한 종합 보고서를 발행했으며, ODI 자체 연간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향후 3년간 장애 아동의 육아환경 개선을 위해 35만 파운드 지원 예정
- 지난 해 버스, 기차, 역 등의 장애인 접근성이 증가됨
- 장애 관련 혐오 범죄의 보고 및 기소 상황 개선을 위한 범부처간 대책 추진
- 2009년 장애시설기금(Disabled Facilities Grant)이 20% 증가하였으며, 2010년 6% 추가 인상계획
- 지난 해 장애아동 수당이 60% 증가함

ODI는 또한 잉글랜드 지역의 Disability Equality Duty 이행 상황에 관한 연구결과를 출판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장애인의 권익 신장

1) 2006년 12월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장애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 이들의 권익을 신장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문제에 관한 대중의 인식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보고서는 또한 장애 평등 계획 (Disability Equality Schemes)의 개발에 장애인의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참조: The Office for Disability Issues 는 2005년, Improving the Life Chances of Disabled People 보고서의 권고에 의해 설립된 범부처간 기관으로, 장애인의 기회 보장과 성과 보호를 위한 임무와 이를 위한 부처간 조정을 담당한다.

영국,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2008년 12월 1일

(원 문 링크: <http://www.dwp.gov.uk/mediacentre/pressreleases/2008/dec/drc119-011208.asp>)

일본

기초연금제도의 국가지원비율 인상 계획 연기 (Pension funding expansion faces delay)

아소 총리는 기초연금제도의 국가지원비율을 현행 3분의 1수준에서 50% 정도로 인상하기로 한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아소 총리는 취임 당시, 2009년 4월에 기초연금제도의 국가지원비율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지난 목요일, 후생노동성 장관 Yoichi Masuzoe 는 재무성 장관 Shoichi Nakagawa를 만나 기초연금제도의 국가지원비율 인상 일정을 현안대로 유지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소 총리는 지난 토요일 후생노동성 장관과 같은 의견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정은 융통성 있게 조정가능하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모든 것은 자금조달 상황과 관련이 있으며, 취임 시 일정에 관해 언급한 것은 2009년 회계연도 내 해결을 의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구 노령화와 연금 재정상태가 악화되면서, 지난 2004년 기초연금제도의 국가지원비율을 3분의 1에서 50%로 인상하기 위해 연금법이 개정되었다.

약 매년 2.3조 엔의 자금이 연금제도를 위해 필요하며,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은 소비세 인상을 통해 연금지원비율 인상에 따른 정부의 부담을 충당하는 안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아소 총리는 이에 대해 경기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세금을 인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더해, “연금지원비율 인상은 오래 전에 결정된 사항이며, 여전히 우리는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라고 하였다.

사회보장비용의 증가에 따라 소비세 5%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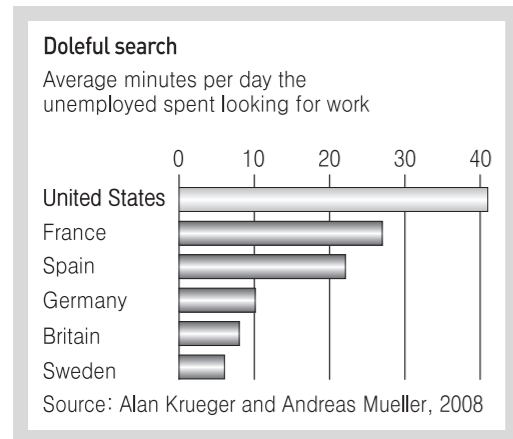
상안이 제기되어 왔으나, 경기침체와 선거의 영향 등으로 소비세 인상안은 유보되어 왔다.

The Japan Times 2008년 12월 5일
(원문링크: <http://search.japantimes.co.jp/cgi-bin/nn20081205a1.html>)

미 국

실업보험제도 개혁 필요 (a safety net - in need of repair)

미국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실업보험제도(Unemployment-insurance, UI)의 급여수준이 낮고, 급여기간도 짧으며, 실업자 대비 급여대상자수도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기가 호황일 때는 이런 미국식 제도는 실업자들이 적



극적으로 일자리를 찾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유럽의 실업자들과 비교 했을 때, 미국의 실업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참조)

그러나 경기 침체 시에는, 즉 일자리수가 감소 할 때에는 실업자들에게 큰 재정적인 어려움을 야기한다. 이런 이유로 실업보험제도 개혁을 위해, 차기 오바마 행정부의 관심이 요구된다.

현 제도의 경우, 주정부는 연방기준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며 이 경우 연방정부가 행정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현 제도는 미국의 노동력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다.

주정부의 급여지급 조건은 시간제 근로자와 저임금 근로자를 종종 급여대상에서 탈락시키고 있다. 또한, 점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시간제 일자리만을 선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제 일자리만을 원하는 사람들은 급여대상에서 제외된다. 급여는 일반적으로 6개월 동안 지급되며, 이는 정상적인 경제 상황에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그러나 경기 침체 시에는 상황이 다르다. 물론, 실업률이 특정 한계점에 이를 경우 연장급여가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규정된 한계점의 수치가 너무 높아 연장급여가 지급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지난 주 실업 급여 신청자수는 586,000 명이었으며, 이는 26년 만에 최고 수치이다. 일반적으로 실업자의 60%는 급여대상 조건을 충족하

지 못하기 때문에,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운이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실업보험은 경기가 나빠졌을 때 가계의 구매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자동안정장치 중 하나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짧은 급여지급기간과 낮은 급여수준으로 인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평균 주당 급여액인 약 300달러는 민간기업의 평균 임금의 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미시시피 주의 최고 주당급여액인 230 달러는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선 200달러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급여액이 적은 이유 중의 하나는 실업보험이 주정부가 고용주에게 부과하는 급여세 (payroll taxes)에 의해 충당되기 때문이다. 경기가 좋을 때에도 주정부들은 급여세 인상을 선호하지 않으며, 이는 다시 말해 경기가 악화될 경우 실업급여 기금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경우, 많은 주 정부들이 비용 충당을 위해 다른 종류의 세금을 인상하거나 연방정부로부터 기금을 차용하게 된다. 현재 약 30개의 주정부가 연방정부로부터의 기금 차용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실업보험제도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로 “experience rating”을 꼽을 수 있다. 이는

근로자를 자주 해고하는 회사에게 더 높은 급여세를 부과하는, 해고방지 제도이다. 그러나 Princeton 대학의 Alan Krueger 교수에 따르면, 많은 주정부들이 고용주들에게 최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이를 상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 보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시애틀 하원의원 Jim McDermott 이 상정한 안은 주정부가 급여지급조건을 시간제 근로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급여산식을 더 관대하게 변경 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가 주정부에게 현금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다른 안은 46년 된 무역 조정 지원 프로그램 (Trade Adjustment Assistance programme) 의 지원자격을 크게 확대하여, 서비스 분야 근로자를 포함하고 더 관대한 급여액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두 안 모두 하원을 통과하였으나, 상원에서 보류중이다.

Economist 2008년 12월 30일
(원문링크: http://www.economist.com/world/unitedstates/displaystory.cfm?story_id=12865107)